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의 안
번호

11-03446

남궁역 의원 (국민의힘, 동대문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위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은 제24조(도시공원의 점용허가), 제 27조(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), 제38조(녹지의 점용허가 등) 에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, 사업 또는 공사에서 나무를 베는 등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할 것을 규정하고, 법령에 따라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고 있는바, 관련한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반영하고(안 제 22조제1항), 공사 또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·감독하도록 규정하였으며(안 제22조의4),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(안 제23조제2항 신설)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